

# 목 차

1. 서면질문·답변서 ————— 437
2. 199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438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 455
4. 임도시설및유지관리와호우피해방지대책에관한건의안  
————— 492
5.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01
6.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05

## 서 면 질 문 · 답 변 서

질 문	이 수 현 의원	답 변	평 창 군 수 (도시과장)
회 의			
<p><b>【질문요지】</b></p> <p>1. 대화면 지역에 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없는지 ?</p> <p>2. 없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p>			

### 【답 변】

- 군 및 한국주택공사에서 별도의 건립계획은 없으나 향후 대화면소재 실제 입주 가능한자의 시장조사등을 통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 하겠음.

1995年度第2回平昌郡一般會計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 審 查 報 告 書

1995年 11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1995년 11월 10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5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5.11.10.상정)

○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5.11.15.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

가. 제안이유

○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  
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995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4억5,900만원이며 이를 합한 1995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698억2,600만원대비 7.8%가 증가한 752억8,500만원임.

○ 이중 일반회계가 52억5,300만원, 특별회계가 2억600만원이 증가 하였음.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고선)

####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 세입은 총 52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 증가되었음.
- 세외수입은 '94년도 보조금 송금지연등의 잡수입이 대부분이며 송금지연에 따른 세입 결함등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
-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은 중앙내시액을 계상한것임.
- 지방세 및 지정재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세입추계의 부정확으로 인한 중.감액으로 판단되며 기타 세입예산의 계상에는 문제가 없음.

#### 나. 일반회계 세출부문

- 경상비는 직제 개편, 정원 결원을 적용등에 따른 인건비의 삭감이 대부분이고
- 사업비는 '95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종으로써 대부분 차년도로 이월될 사업들이며 이중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액은 국도비 중액 보조등의 결과에 따라 확보를 하여야할 사항임.

- 봉평 남안교가설공사는 계속비 대상사업으로써 년부액으로 정해져 있는 년차별 재원의 확보가 불확실한바, 재원확보 대책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임.
- 기타 95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중 노후 보도블럭 정비의 7건의 사업들은 전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금번 2회추경에 타사업으로 변경투자가 된 것은 지방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들임.

#### 다. 기타특별회계

- 세입은 주민부담금과 국도비중액내시 용자금회수등이며 예산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세출은 상수도관련사업이 주종이며 지방채상환계획의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등 세출예산계상에 무리 없이 편성이 되었음.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95년 8월 25일 평창군조례 제1467호로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통합운영토록 공포 되었고, 공포일로부터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2회추경시에도 이를 적용치 않고 제출된  
 것을 조례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임.

#### 4.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문화예술회관 설계 변경 이유는?</p>	<p>○ 지장물등으로 불가피하였음</p>
<p>○ 읍면및출장소의 복사기가 노후 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는 데 적극 예산을 확보 교체할 용의는?</p>	<p>○ 전반적인 사용여부를 파악 조기교체될수 있도록 하겠음.</p>
<p>○ 달동네 공사현장대리인이 미상주 부실시공이 우려됨.</p>	<p>○ 상주사실을 재확인하고 금후 동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p>
<p>○ 상수도 낙뢰방지시설을 전시설 에 설치되도록 확대 하기 바람</p>	<p>○ 적극검토 조기실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이 상수도 사업시 근거 불명확으로 주민부담 사례를 개선하여 주기 바람.</li> <li>○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위배하여 예산안을 제출 심사에 혼선을 초래 금후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li> <li>○ 쓰레기 봉투가 두께가 얇아 사용중 파손이 많음 금후 제작비 등을 고려 개선 함이 타당.</li> <li>○ 호우발생한 공공시설인 임도의 산사태 피해 보상과 쓰레기 매립장 <sup>침수</sup> 피해에 대한 보상적용이 다른 임도시설로 인한 피해 미보상 사유와 보상책은</li> <li>○ 하천 골재채취 수입이 세입부서와 실무부서간 의견이 다른 그 이유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주민 자부담 문제는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음.</li> <li>○ 실무부서간 협조 미흡과 실무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사례가 없도록 유념 하겠음.</li> <li>○ 전국동시실시로 기준이나 금후 제작시 적극 검토 하겠음.</li> <li>○ 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부득이한 사항임.</li> <li>○ 금면 수해로 인해 채취량 감소 등 채취여건 변동으로 발생됨.</li> </ul>

## 5. 討論要旨

【 없음 】

## 6. 修正案要旨

### 가. 수정이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95 제2회추경시 조례의 규정에 위배되어 제출된 사항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세입을 증액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및 특별회계 총액의 규모를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주요골자

#### ○ 일반회계

- 세입중 세외수입의 골재낙찰차 1억원을 증액하고
- 세출중 일반행정비의 내무행정비에서 1억원 증액함.



## 7. 審査結果

○ 일반회계 :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 의결

○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부결하고 기타 4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 8. 少數意見의 要旨

○ 남안교가설공사의 계속비 승인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원 확보 대책을 감안 집행부의 재원대책 확보를 촉구하고 승인함이 타당함.

## 9. 其他 必要한事項

○ 없 음

첨부 : 1. 1995년도 제 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계속비사업조서 1부. 끝.

# 199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1. 예산총칙

### ○ 제1조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총 액	일시차입한도액	비 고
계	75,285,734	2,258,572	
일반회계	68,584,141	2,057,524	
특별회계	6,701,593	201,047	

### ○ 제2조 ~ 제7조 : 변동사항 없음

## 2. 예산안 수정내역

###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계			68,484,141		100,000	68,584,141	
200 세외수입			6,657,153		100,000	6,757,153	
	210 경상적세외수입		3,623,075		100,000	3,723,075	
		214 사업장 생산 수입	50,000		100,000	150,000	세입추가 요인발생

###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 항		감 액	증 액		
계			68,484,141		100,000	68,584,141	
2000 일반행정비			20,637,532	-	100,000	20,737,532	
2300 내무행정비			7,859,990	-	100,000	7,959,990	
	2310 내무행정		7,038,262	-	100,000	7,138,262	
		2314 국민운 동지원	4,227,276	-	100,000	4,327,276	특별회계 전출금

## 다. 특별회계

### 1)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수정사유 및 내역
		감 액	증 액		
계	6,601,679	86	100,000	6,701,59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13,981		100,000	513,98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55,948	86		155,862	

### 2)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수정사유 및 내역
		감 액	증 액		
계	6,601,679	363	100,277	6,701,593	
사업수입	1,114,099		277	1,114,376	
사업외수입	3,969,808	363	100,000	4,069,445	

### 3)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수정사유 및 내역
		감 액	증 액		
계	6,601,679		99,914	6,701,593	
용자및출자	573,305		99,914	673,219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평창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결  
처리 되므로 특별회계 총액의 규모를 수정함.

# 계속사업비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 총액	전 전년도이전			전 년 도			당해년도 계 획 액	'96년도 계 획 액	'97년도 계 획 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 행 잔 액	예산액	집행액	집 행 잔 액				
남안교 가 설 사	당초	1,097	-	-	-	-	-	-	359	100	638	

# 1995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 번	안 호	19
--------	--------	----

제출년월일 : '95.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5,25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153백만원과 특별회계 106백만원이며

[ 세 입 ]

일반회계는 지방세 602백만원, 세외수입 947백만원, 지방교부세 200백만원, 보조금 3,860백만원, 지정재원  $\Delta$ 456백만원입니다.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Delta$ 545백만원, 물건비 144백만원, 이전경비  $\Delta$ 29백만원, 자본지출 5,818백만원, 자치단체내부거래  $\Delta$ 95백만원, 예비비및기타  $\Delta$ 14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70백만원, 이전경비  $\Delta$ 45백만원, 자본지출 59백만원, 융자 및출자  $\Delta$ 100백만원, 보전재원 100백만원, 기타 2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95년도 (2회 추경)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안)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산

평      창      군



1995년도 ( 2회 추경 )

# 예 산 총 칙

\* 제 1 조 :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75,085,820	2,252,574
일	반 회 계	68,484,141	2,054,524
특	별 회 계	6,601,679	198,050
	상 수 도 특 별 회 계	4,439,053	133,171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729,873	21,896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530,398	15,91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13,981	12,41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5,948	4,678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02,426	9,07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000	900

- \* 제 2 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 \* 제 3 조 :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 \* 제 4 조 : 19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백만원으로 한다.
- \* 제 5 조 :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 제 6 조 : 1995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 와 같다.
- \* 제 7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천원으로 한다.

# 예 산 총 규 모

( 단 위 : 천 원 )

회 계 별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 기 정 ) 예 산 액	증 △ 감
계	75,085,820	69,826,682	5,259,138
일 반 회 계	68,484,141	63,331,397	5,152,744
특 별 회 계	6,601,679	6,495,285	106,394
상 수 도	4,439,053	4,416,053	23,000
주 택 사 업	729,873	724,873	5,000
의 료 보 호 기 금	530,398	474,056	56,342
새 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413,981	513,981	- 100,000
저 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금	155,948	155,862	86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302,426	180,460	121,966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30,000	30,000	0
	0	0	0
	0	0	0

# 세입세출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비율 (%)	전년도 (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전년도 (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전년도 (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세	계	75,085,820	100%	69,826,682	100%	5,259,138	68,484,141	100%	63,331,397	100%	5,152,744	6,601,679	100%	6,495,285	100%	106,394
	지방세	7,064,771	9%	6,462,771	9%	602,000	7,064,771	10%	6,462,771	10%	602,000	0	0%	0	0%	0
	세외수입	11,741,060	16%	10,743,942	15%	997,118	6,657,153	10%	5,710,257	9%	946,896	5,083,907	77%	5,033,685	77%	50,222
	경상격채외수입	4,737,174	6%	4,701,967	7%	35,207	3,623,075	5%	3,587,591	6%	35,484	1,114,099	17%	1,114,376	17%	- 277
	입지격채외수입	7,003,886	9%	6,041,975	9%	961,911	3,034,078	4%	2,122,666	3%	911,412	3,969,808	60%	3,919,309	60%	50,499
	지방교부세	24,561,000	33%	24,361,000	35%	200,000	24,561,000	36%	24,361,000	38%	200,000	0	0%	0	0%	0
	지방양여금	6,561,759	9%	6,561,759	9%	0	6,561,759	10%	6,561,759	10%	0	0	0%	0	0%	0
	보조금	22,900,906	30%	18,985,050	27%	3,915,856	21,383,134	31%	17,523,450	28%	3,859,684	1,517,772	23%	1,461,600	23%	56,172
	국고보조금	13,867,491	18%	11,305,104	16%	2,562,387	12,959,561	19%	9,942,112	16%	3,017,449	907,930	14%	1,362,992	21%	- 455,062
	도비보조금	9,033,415	12%	7,679,946	11%	1,353,469	8,423,573	12%	7,581,338	12%	842,235	609,842	9%	98,608	2%	511,234
	지정재원	2,256,324	3%	2,712,160	4%	- 455,836	2,256,324	3%	2,712,160	4%	- 455,836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재산매각수입	1,963,643	3%	2,712,160	4%	- 748,517	1,963,643	3%	2,712,160	4%	- 748,517	0	0%	0	0%	0
기금 및 기타	292,681	0%	0	0%	292,681	292,681	0%	0	0%	292,681	0	0%	0	0%	0	
출	계	75,085,820	100%	69,826,682	100%	5,259,138	68,484,141	100%	63,331,397	100%	5,152,744	6,601,679	100%	6,495,285	100%	106,394
	인건비	10,292,097	14%	10,837,820	16%	- 545,723	10,279,857	15%	10,825,580	17%	- 545,723	12,240	0%	12,240	0%	0
	물건비	8,500,990	11%	8,287,610	12%	213,380	7,788,270	11%	7,644,532	12%	143,738	712,720	11%	643,078	10%	69,642
	이전경비	5,325,783	7%	5,399,362	8%	- 73,579	4,640,283	7%	4,668,862	7%	- 28,579	685,500	10%	730,500	11%	- 45,000
	자본지출	48,200,480	64%	42,322,947	61%	5,877,533	44,094,999	64%	38,276,996	60%	5,818,003	4,105,481	62%	4,045,951	62%	59,530
	용자및출자	573,305	1%	673,219	1%	- 99,914	0	0%	0	0%	0	573,305	9%	673,219	10%	- 99,914
	보전재원	546,450	1%	446,450	1%	100,000	127,051	0%	127,051	0%	0	419,399	6%	319,399	5%	100,000
	내부거래	723,139	1%	818,139	1%	- 95,000	723,139	1%	818,139	1%	- 95,000	0	0%	0	0%	0
	기타	165,489	0%	139,002	0%	26,487	113,923	0%	87,606	0%	26,317	51,566	1%	51,396	1%	170
	예비비	758,087	1%	902,133	1%	- 144,046	716,619	1%	882,631	1%	- 166,012	41,468	1%	19,502	0%	21,966

1995 年度  
行政事務監查計劃

平 昌 郡 議 會

# 목 차

1. 감사의 목적	457
2. 감사기간	457
3. 감사대상 기관	457
4. 감사반 편성	457
5. 감사대상 사무	458
6. 감사일정 및 장소	458
7. 감사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458
8. 감사요령	459
9. 행정사항	460

붙임 : 서류제출 목록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 첫째,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  
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둘째,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사례는 적극 권장하여 군정집행에  
반영하며
- 셋째, 행정의 민주성·능률성·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95. 11. 27 ~ 12. 2 (6일간)

## 3. 감사대상 기관

가. 당연대상 기관 : 평창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

##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위원장 : 김종영 위원

○ 간 사 : 유돈문 위원

○ 위 원 : 이경진 위원, 이상훈 위원, 이수현 위원, 김두경 위원

우강호 위원

나. 사무보조 : 전문위원 신교선의 4명

(의사계장, 직원 및 기록원 3)

## 5. 감사대상 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사무(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95.11.27(월) 10:00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군청 대회의실	
'95.11.28(화) 10:00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	
'95.11.29(수) 10:00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	
'95.11.30(목) 10:00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	
'95.12. 1(금) 10:00	축산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	
'95.12. 2(토) 11:00	위생환경사업소, 강평	"	

## 7. 감사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가. 보고요구 : "별도" 보고요구서에 의함.

나. 서류제출요구 : "별도" 서류제출 요구서에 의함.

다. 증인 출석요구 : "별도" 증인 출석요구서에 의함.

## 8. 감사요령

### 가. 감사방법

-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과 현지확인 병행
- 업무보고청취, 서류검토, 질의·답변, 현지확인

### 나.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증인선서(기관장 및 출석요구의견)
-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대상 사무보고(업무보고)
- 질의·답변(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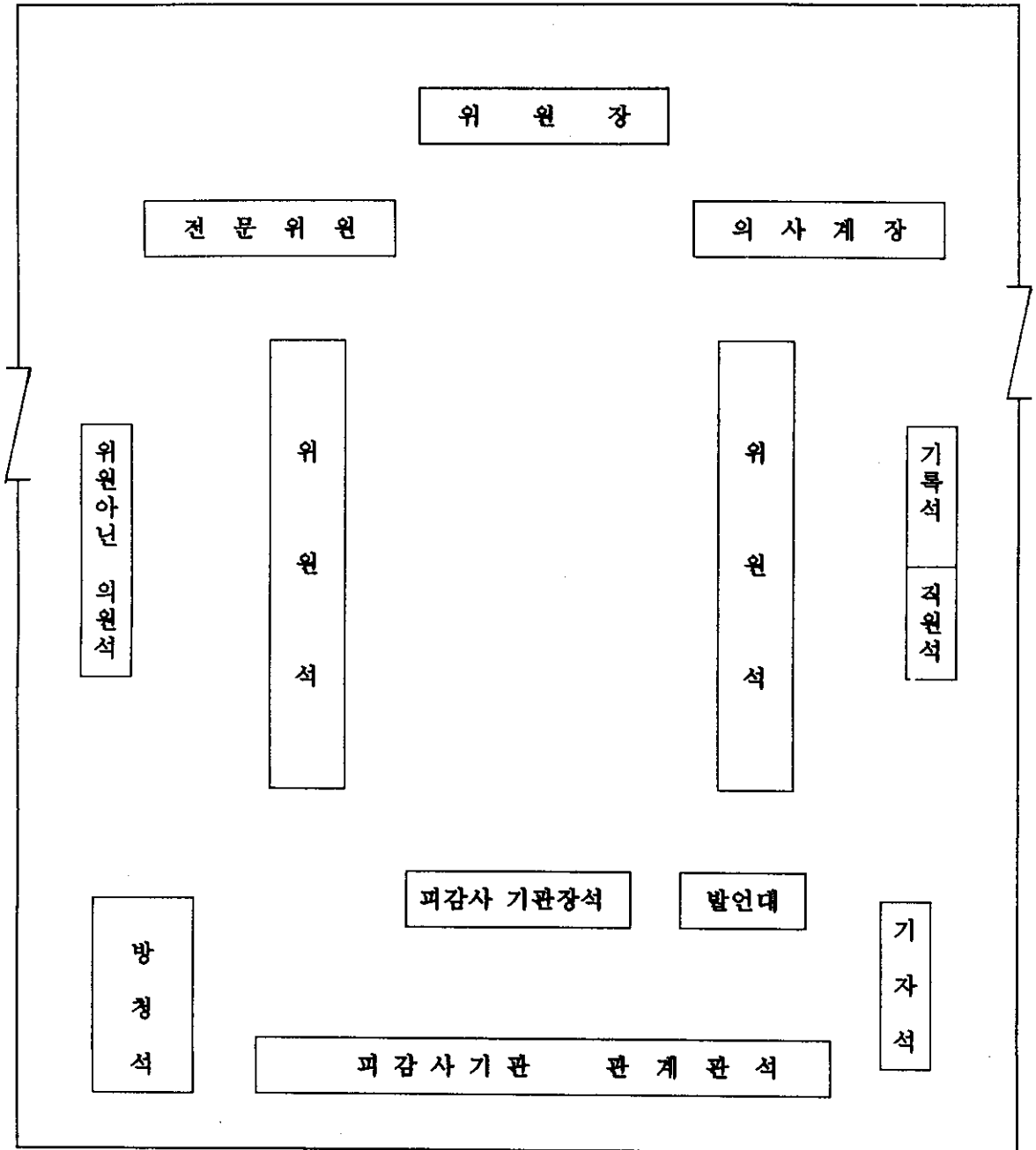
- 작성 일 : 감사종료즉시
- 작성방법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시를 받아 간사와 협의  
전문위원실에서 작성



## 9. 행정사항

### 가. 감사장 준비

#### ○ 감사장 배치도



## 나. 기타 집행기관 협조사항

○ 감사장 준비 : 군청대회의실 (배치도 참조)

※ 행정사무감사기간 : '95. 11. 27 ~ 12. 2 (6일간)

○ 앰프시설 및 난방

○ 의원 휴게실 설치 운영

# 보 고 요 구 서

## 평 창 군 수 귀 하

평창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소관별 사무처리상황 (지방자치법 제9조관련)
  2. 보고일시 : 1995년 11월 27일~12월 2일
  3. 보고장소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보고자료 제출 : '95. 11. 22(수) 12:00한
- 나. 보고일시 및 대상공무원 : 따로붙임

1995년 11월 18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 보고일시 및 대상 공무원

보고일시	대 상 공 무 원	비 고
'95.11.27 (월) 10:00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95.11.28 (화) 10:00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95.11.29 (수) 10:00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95.11.30 (목) 10:00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95.12. 1 (금) 10:00	축산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촌지도소장	
'95.12. 2 (토) 11:00	위생환경사업소장, 강평	

# 서 류 제 출 요 구 서

## 평 창 군 수 귀 하

평창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출서류

가. 소관별 사무처리상황 (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사항 (목록 따로붙임)

2. 제출일시 : 1995년 11월 22일(수) 12:00한

3. 제출장소 : 평창군의회 사무과

###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제출부수 : 14부

나. 서류작성.편철

○작 성 : A4용지 워드프로세서작성 상철(서류사본제외)

○편 철 : 목차(페이지 및 색인표시)에 의하여 실과소단위 분철

1995년 11월 18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 증인 출석 요구서

##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1995년 11월 27일 ~ 1995년 12월 2일
2. 출석장소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장
3. 심문사안(증인): 소관별 감사대상 사무질의.답변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출석일시 및 대상공무원 : 따로붙임

1995년 11월 18일

평창군 의 회 의 장

□ 출석일시 및 대상 공무원

출석일시	출 석 대 상 공 무 원	이 유
'95.11.27 (월) 10:00	○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 관계공무원 전원 참석	행정사무감사장출석 중언및 의견진술등
'95.11.28 (화) 10:00	○ 부군수,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
'95.11.29 (수) 10:00	○ 부군수,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
'95.11.30 (목) 10:00	○ 부군수,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
'95.12. 1 (금) 10:00	○ 부군수, 축산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사업과 장, 농촌지도소장	"
'95.12. 2 (토) 10:00	○ 부군수, 위생환경사업소장 ※ 강평시 전 관계공무원 참석	"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기획실	1.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94~'95)	유돈문위원
	2. 년도별 지방채무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각 사업별 원금, 이자 및 금후상환계획등	
	3.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별 사유 ( '94 ~ '95)	
	4. '94, '95년도 예비비예산 운용지출 내역	이수현위원
	5. '94, '95년도 풀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 내역	
	6. 자매결연등 국제교류 현황	
	7. 행정소송 접수 현황및 진행 상황	
	8. 평창군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확정여부 - 확정됐다면 세부추진일정대로의 추진 여부? -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유?	우강호위원
	9. '94,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김종영위원
	10. '94, '95년도 의회의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11. 5개년 중장기 재정계획 및 활용실태(읍면별)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p>12. 종합월동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동기 생필품 안정적 수급 계획</li> <li>- 안전사고 예방</li> <li>- 계층별 보호 대책</li> <li>- 폭설등 재해 대책</li> </ul> <p>13.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황(사업장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상회 건의 사업</li> <li>- 일반주민 편익사업등</li> </ul>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문화공보실	1. 용평스키장 문제 및 관리 현황	이경진위원
	2. 문화예술회관 입찰에 관한 사항 - 예산, 입찰방법, 발주및 하도급	이상훈위원
	3. 평창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예산 집행현황 과 설계변경 내역	이수현위원
	4. 노성제 예산집행 내역및 예산 지원 현황 ( '94~'95)	
	5. 노성제 경품행사 예산 집행 내역('95)	
	6.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및 지원 현황 - 단체현황및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우강호의원
	7.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내용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제적 활동실적	
	8. 비지정관광지별 운영 실태및 입장료 정수현황	김종영의원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내 무 과	1. 각 사회단체및 타기관 예산 지원 현황('95)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대(읍면별 인원 및 예산), 민주평통협의회등	유돈문위원
	2.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 지출현황('95)	이상훈위원
	3. 공중정보통신망회선 DNS MODE 시설 설치현황	
	4. 군수, 부군수 특별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95)	
	5. 평창군 직제및 정·현원 현황(기관별)	이수현위원
	6.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94, '95 상급기관 감사)	
	7. 직장체육활동비 지원 내역('95)	우강호위원
	8. '94. '95직원 상벌대상및 포상자공적 내용 - 가능한 자세히	
	9. 평창군의 기관별 일용직 고용현황('93~'95) - 년도별, 직종별, 인원, 예산집행(평균임금) 등 고용 관리사항 전반	
	10.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실태및 처리건수	
	11. '95군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김종영위원
	12. 기관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95)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사회진흥과	1. 용평리조트 골프장에 사용되는 연간 농약량? ( '94 ~ '95)	이경진위원
	2. 농어촌마을길포장 사업 현황( '94, '95)	이상훈위원
	3. 봉평도읍정비사업 년도별 사업계획대 추진 현황	유돈문위원
	4. 도민체전 출전예산및 지출내역( '93. '94. '95) - 선수단 식비및 훈련비 - 출전인원및 선수단복 종목별 상세히 열거 ( 유니폼, 신발등 모든체육용품 단가명시 ) - 입찰 현황(납품업체)	이수현위원
	5. 위험소교량 파악 현황	
	6. '95새마을지회 예산지원 내역	
	7. 옥외 광고물 인·허가 대장 - 불법 옥외광고물 처리 현황	우강호위원
	8. 청소년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	
	9. 마을안길 도로포장 및 미포장 현황 - 읍면별 포장 거리, 읍면별 미포장 거리	김종영위원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재 무 과	1. 국공유지 매각 현황과 취득, 관리현황 ( '94~'95)	이경진위원
	2. 지방세 세목별 부과및 결손처분 현황(94~95)	
	3. 수입증지 관리 현황 ( '95)	
	4. 국공유지 임대료 징수 및 체납현황 ( '93 ~ '94)	이상훈위원
	- 대지분, 농경지분, 임야분, 잡종재산등의 연도별, 읍면별	
	5. 사용료 징수 교부금(하천 골재 낙찰차액, 모래자갈 현황) 현황	
	6.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7. 국도비 보조금 관리현황	유돈문위원
	8. 관내 별장에 대한 세금징수 현황 - 개인별 당초 부과액, 징수액, 연체액등	
	9. 평창경찰서부지 확보 예산 집행내역 - 지번, 지적, 소유자, 금액등	
10. 용평리조트, 보광 지방세 징수 내역	이수현위원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11. 관내법인 소유토지 현황및 세무조사 실시내역 과 법인체 지방세 납부 현황(구체적으로)	김두경위원
	12. '94. '95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계획대 비 실적 현황	우강호위원
	13.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내역 - 시공업체, 금액, 공사명 등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지 적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상황</li> <li>2. '95 개발부담금 내역 (미납현황까지 상세히 기록)</li> <li>3. 특별조치법대상 필지 및 실적 현황 (구체적인 내역)</li> </ol>	<p>이경진위원 우강호위원</p>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사 회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호물자및 성금품의 접수 관리내역('94~'95)</li> <li>2. '95년도 사회과에서 처리한인·허가 관리현황 - 접수, 처리내역</li> <li>3.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현황 - 관내 장애인 등급별 현황 - 지원 현황(명단및 지원 내역:전체적으로) - 지원사업의 효과성</li> <li>4.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94, '95) - 읍면별 현황 (당초대비, 증감사유) - 생활보호대상자설정 기준 - 생계보호비 지급 현황</li> <li>5. 각읍면별 접객업소 위생검사 현황및 처리결과 - 년 위생검사 회수 및 적발, 처리현황</li> </ol>	<p>유돈문위원</p> <p>우강호위원</p> <p>김종영위원</p>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환경보호과	1. 폐기물처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 미화원 총인원대비 읍면별 배정인원 현황 - 청소차 보유현황(읍면별)	이경진위원
	2. 대화쓰레기 소각로 예산집행 내역 - 사업착공년도부터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이수현위원
	3. 분뇨정화조 설치 및 준공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10조(설치신고)제11조(준공검사)가 읍면에 관한 위임된 내용	
	4. 오수처리시설(농촌)설치 기준과 기시설현황 및 향후 대책	김두경위원
	5. 농촌오수처리장 현황 - 가동증인시설 3개소의 현재 가동 상태및 문제점 보완 내용 - 건설증인 시설(장평) 예산집행내역 및 공사진도	우강호위원
	6. 오대천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 대책 현황 - 월정사, 국립공원, 서울장, 오대산장, 가족호텔, 오대산연수원, 오대산관광호텔 평창연립, 간평2리(구석드리) 연립등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산업과	1. 농지전용신청 민원중 불허처분한 현황 및 사유	이경진위원
	2. 농산물 집하장, 공판장 시설현황및 사업내역	유돈문위원
	3. '95비가림재배하우스 현황 및 지원 내역 (읍면별)	이수현위원
	4.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회동,재산) 내역 · 예산집행상황(농진공참조)	
	5. 읍면별 저온저장고 설치현황및 예산집행 현황 ( '93 ~ '95)	
	6. 농업단체 현황및 지원 내역	우강호위원
	7. 농작물 재해대책 현황('94.'95) - 피해보상 현황 포함	
	8. 농지전용허가 내용및 전용비 내역	
	9. 농어촌발전기금등 융자금 지원단체및개인현황	
	10. 명품가공 시범사업 추진 상황 - 대상지역 및 품목 - 계획 대비 실적	김종영위원
	11. '95경쟁력 재고사업 추진 현황 - 읍면별 사업자금 지원 내역,개인별명단, 규모별 사업내역등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12. 밭토양 정밀검정 추진 현황 - 읍면별 건수 , 사업성과 13. '95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 현황 - 지원단체, 수량등 14. '95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내역 - 개인별 명단, 지원 금액등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지역경제과	1. 평창농공단지 조성, 현재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보완 대책(육성지도등 미수금 현황)	이경진위원
	2. 시장개설 및 관리 상황	
	3. 벽지노선 인·허가 실태및 계획	유돈문위원
	4. 운수사업 지원 내역('94 ~ '95)	이수현위원
	5. 주차감시원 인원, 직급및 배치 현황 (소요예산 포함)	
	6. 개인택시 허가 내역('93, '94, '95)	우강호위원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대한 내역 - 회사별, 연도별, 출연금등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축 산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지조성 허가내역 및 사후관리현황('94, '95)</li> <li>2. 송어치어장 인·허가 처리 현황</li> <li>3. 송어양식장 오·폐수처리장 및 예산지원 현황</li> <li>4.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li> <li>5. 젓소 경쟁력사업 추진현황</li> <li>6. 가축방역약품구입관리 현황</li> <li>7. 대단위 양돈단지사업 추진현황('95)</li> <li>8. 축산 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지원 내역</li> <li>9. 축산기금 용자 현황및 관리 상황(운영실태등)</li> </ol>	<p>이경진위원</p> <p>유돈문위원</p> <p>이상훈위원</p>          <p>이수현위원</p>          <p>우강호위원</p>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산림과	1. '94, '95 조림지 사후관리 (추비, 풀베기, 치수가꾸기, 덩쿨제거, 검목)에 대한 지출내역	이경진위원
	2. 무궁화, 야생화, 목류 가로수 식재 관리내역	
	3. 산림훼손, 토석채취, 수목굴취 허가및 사후관리 내역	
	4.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감독현황 (음력월 명단및 사역기간, 월급여액등)	유돈문위원
	5. 국공유지 임대료 징수및 체납현황('93~'94) - 임야분	이상훈위원
	6. '94, '95솔잎혹파리 방제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구체적으로) - 항공엽면시비,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지면약제살포등 기타	이수현위원
	7. '94, '95 산림조합(임협)에 위탁해서 집행한 사업내역	
	8. 솔잎혹파리 피해목 현황 및 벌채면적과 미벌채에 대한 향후 대책	김두경위원
	9. '94, '95임도시설 피해상황 및 보수현황과 피해복구 및 '95 피해보상 대책(구체적으로)	우강호위원
	10. 불법 산림훼손및 산림사범 단속처리 현황	
	11. 임업 후계자별 지원금 및 융자 내역	
	12. 산림개발 관련 융자금 지원단체 및 지원 현황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건설과	1.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내역(세부적으로)	이경진위원
	2.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역	
	3.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각읍면별)	유돈문위원 이수현위원
	4. 위험교량 실태 조사 내역	
	5. 금당계곡 군립공원화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계획	김두경위원 우강호위원
	6. '95 이월사업 내역(군도, 농어촌도로)	
	7. '94, '95하천감시원 명단 및 예산 지급내역(세부적으로)	
	8. '95경지정리 사업별 내역	
	9. '95수해피해지구 사업 계획서 및 복구계획 현황	
	10. 군도 노선별에 대한 년도별 투자 계획	
	11. 농어촌도로 노선별 년도별 투자 계획	
	12. 방제사업표지판, 현수막등의 총수량 및 소요 예산 - 사업비, 사업량, 시행자등	
	13. 수해위험지역 조사 현황('94. '95)	
	14. '95 수해피해지구사업, 보상계획서 및 현황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15. 수해상습지 및 취약지 대책 - '94. '95수해상습지 피해 내역등  16. 8월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및 구호품 접수 내역 - 성금자 명단· 금액및 구호물품 수량등  17.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내역 - 필지별 현황	김종영위원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도 시 과	1. 도시계획구역내 계획대 도로개발 불가능지역 현황	이경진위원
	2. 상수도 요금 징수현황 ('94, '95)	
	3. 상·하수도 사업 현황 ('95)	
	4.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	유돈문위원
	5. 농촌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현황	
	6. 미탄생토수질검사 평가서('93 ~ '95)	이상훈위원
	7. 평창 달동네 정비사업 현황	
	8.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현황	이수현위원
	4. 주택은행의 채무액 원금 및 이자현황	
	9. 대화시가지 하수도 정비계획추진 상황및 뒷골목 포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및 관계서류	
	10. 건축법의 허가, 신고, 신청에 대한 관계법령 제시및 설명자료	
	11. '95농촌주택용자금 지원내역(읍면별)	
	12. 대화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 - 진행상황, 확정계획	김두경위원
	13. 국민주택 년도별 용자금 상환 현황('93~'95)	
	14. 봉평상수도 시설 추진 계획및 대책	
15. 송정택지개발사업	우강호위원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조성 및 분양현황</li> <li>- 미분양택지 향후 분양 대책</li> <li>- 주차난 해소 방안</li> <li>16. 간이상수도사업 예산 집행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자부담 내역</li> <li>- 주민 자부담의 회계처리 내역</li> </ul> </li> <li>17. 소도읍, 오지개발사업 읍면별 내역</li> <li>18. 상수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별 현황</li> </ul> </li> </ul>	<p>김종영위원</p>

##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 서 명	건 명	비 고
민방위과	1. '95년도 공익근무자 현황 - 계획 대비 실적, 근무현황, 근무내용, 복무감독상황, 예산집행내역	김종영위원





'9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내역

부서명	건명	비고
공 통	1. 각종사업의 부대비 집행내역 (사업비 5,000만원 이상)	



# 임도시설및유지관리와호우피해방지대책에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26
----------	----

발의년월일 : 1995년 11월 일

발 의 자 : 우강호의원 외 6 인

## 1. 주 문

산림은 우리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주요자원으로서 과거의 원시적인 이용상태로부터 오늘날에는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또한 산림의 휴양적 기능의 공간과 인간 삶의 토대로서 그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해온 임도사업은 조림,육림,임산물의 생산·운반, 산불방지등 산림경영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농산물 수송로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의 산림은 경사가 급하고 토질이 마사와 토석으로 형성되어 기반이 약하여 집중호우시 돌발적인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큰 피해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천혜의 산림자원이 풍부한 고장으로서 군 전체면적의 80% 이상이 지세가 험한 산악지대로서 우기와 해빙기에 임도 법면의 붕괴는 물론 산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심히 임도사업에 대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임도관련 호우피해 상황을 보면 임도피해가 13억 9,900만원, 농경지피해가 4억5,200만원(별첨)에 달하고 있어 매년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임도시설 자체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에서 유발되는 인재성 재난형태로밖에 단정 지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6만 평창군민의 강력한 뜻을 결집,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임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임도시설단비는 현행 전국의 획일적인 적용을 지양하고 지형지세에 따라 피해방지 수준을 감안한 안정성 있는 현실적인 설계단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임도시설단비는 km당 4,400만원으로 정상 설계단가(강원도 기준)인 1억6,700만원에 비하면 26%밖에 안되는 시설단비로써 이러한 현실에서는 산림 내에다 아무런 방재시설(구조물) 없이 절토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임도는 물론 농경지유실,매몰등 부수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임도시설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일체히 위험지구를 파악하여 항구복구 설계에 의한 보수비를 책정 보수후, 사후 유지.관리 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기 개설된 임도시설의 총연장이 66km인데 비하여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사업비의 경우 연간 2-3km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km당 37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예산으로는 메워진 측구, 매몰된 하수구, 유실된 성토면, 우거진 수풀등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수,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것도 20-30년에 한번정도 보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유발을 조장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피해지 복구액 액정도 당초에 개설된 임도 시설비를 초과 할 수 없다는 원칙이어서 항구 복구의 설계가 불가능한 실정인 바 또다시 부실복구를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도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풍수해 대책법등을 개정 내지는 응분의 보상을 실시 해야 합니다.

부실한 산림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풍수해 대책법상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난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면 결국 정부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탄원으로 일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2. 제 안 이 유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도시설이 과소한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부실시공 되므로 매년 호우로 지반붕괴와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되어 도로 훼손은 물론 주변 농경지및 가옥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개선과 피해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줄것을 관련기관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임.

# 건 의 문

산림은 우리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주요자원으로서 과거의 원시적인 이용상태로부터 오늘날에는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또한 산림의 휴양적 기능의 공간과 인간 삶의 토대로서 그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해온 임도사업은 조림,육림,임산물의 생산·운반,산불방지등 산림경영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농산물 수송로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산림은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토질이 마사토로 형성되어 기반이 약하여 집중 호우시 돌발적인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큰 피해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천혜의 산림자원이 풍부한 고장으로서는 군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지세가 험한 산악지대로서 우기와 해빙기에 임도 법면의 붕괴는 물론 산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심히 임도 사업에 대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임도관련 호우피해 상황을 보면 임도피해가 11억 7,400만원, 농경지피해가 3억 4,900만원(별첨)에 달하고 있어, 매년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임도시설 자체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에서 유발되는 인재성 재난형태로밖에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6만 평창군민의 강력한 뜻을 결집,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임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임도시설단비는 현행 전국의 획일적인 적용을 지양하고 지형지세에 따라 피해방지 수준을 감안한 안정성 있는 현실적인 설계단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임도시설단비는 km당 4,680만원 ('95년)으로 정상 설계단가인 1억6,700만원( 강원도기준 )에 비하면 28% 밖에 안되는 시설단비로써 이렇게 현저히 부족한 예산으로는 산림 내에다 아무런 방재시설(구조물)없이 절토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임도는 물론 농경지유실,매몰등 부수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임도시설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일제히 위험지구를 파악하여 항구복구 설계에 의한 보수비를 책정 보수후, 사후 유지.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기 개설된 임도시설의 총연장이 66km인데 비하여 임도시설 유지 . 관리를 위한 보수사업량은 연간 2 - 3km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km당 37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예산으로 메워진 측구, 매몰된 하수구, 유실된 성토면, 우거진 수풀등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수,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것도 20-30년에 한 번정도 보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 유발을 조장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피해지 복구액 책정도 당초에 개설된 임도 시설비를 초과 할 수 없다는 원칙이어서 항구 복구의 설계가 불가능한 실정인 바 또다시 부실복구를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도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풍수해 대책법등을 개정 내지는 응분의 보상을 실시 해야합니다.**

부실한 산림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풍수해 대책법상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난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면 결국 정부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탄원으로 일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호우피해의 유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국민의 참다운 살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임도시설및 유지 관리와 호우피해 방지대책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시책개선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본 건의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5년 11월 일

평 창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93-'95호우피해상황

<평창군>

(단위:백만원)

피해 일시	피해지		임도피해상황					농경지등피해상황				
	면	리	시설 연도	유실 km	산사태 ha	피해액	복구액	농로유실		농경자유실		피해액
								개소	면적 km	개소	면적 ha	
'93 7.13	용평	도사	'92	0.30	1.36	134	-	-	-	3	0.30	4
	진부	상월 오개	'91	0.28	2.75	192	123	8	2.65	5	1.27	100
소계				0.58	4.11	326	123	8	2.65	8	1.57	104
'94 6.30	봉평	평촌	'93	2.13	1.78	111	70	-	-	-	-	-
'95 8.23	봉평	평촌 -덕거	'93	0.20	0.31	47	28	-	-	2	0.50	-
	용평	장평 -도사	'92	0.55	2.12	232	100	-	-	3	0.62	-
	진부	상월 오개	'91	0.67	4.46	458	186	8	1.36	86	12.27	245
소계				1.42	7.01	737	314	8	1.36	91	13.39	245
합계				4.13	12.9	1,174	507	16	4.01	99	14.96	349



# 임도시설 km당 단비표

(단위:천원)

구분 연도별	건설단비	국유림	사유림	비고
'95년도	167,000	54,892	46,800	
'91년도	-	24,525	22,918	

※'95년도 건설단비 km당 167,000천원은 강원도의 산출기준임

#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	----

제출년월일 : 199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평창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일부를 읍·면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삭제 (안 제2조 제3호)

## 참고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 제20조 (별 칙)

##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2조 제2항에 의거 읍·면장또는 출장소장'을 '제2조 제2항에 의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p> <p>1. - 2. (생략)</p> <p>3. <u>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u></p> <p>4. (생략)</p>	<p>제1조 (목적) -----</p> <p>제2항에 의거 <u>평창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일부를 읍·면장 또는 -----</u></p>	<p>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삭제〉</u></p> <p>4.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발췌서

## □ 住民登錄法 第2條 (事務의 管掌)

- ① 住民登錄에 關한 事務는 市長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守 또는 區廳長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管掌한다.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그의 權限의 一部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區廳長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에 한한다)·邑·面·洞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 住民登錄法 第20條 (過怠料)

- ① 正當한 事由가 없이 第11條, 第12條, 第13條, 第14條第1項 또는 17條의8,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申請을 期間내 하지 아니한 者는 2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② 正當한 事由없이 第17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催告를 받은 者 또는 公告된 者중 期間내에 申告하지 아니한 者는 4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③ 第1項 및 第2項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 ④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 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⑥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출년월일 : '9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군수에게 신고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별표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수리 및 관리업무"를 신설함 {(안)별표 제41호}

##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40호 다음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 및 관리업무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40	( 생   략 )  ( 신   설 )		1~40	( 현행과 같음 )	
			41	○ <u>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 및 관리업무</u>	○ <u>지방자치법 제 5조 제1항 및 행 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관한규정 제4조</u>



#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영업의 신고를 해야 할 업종]
  - 1. 시행령 제7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중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교육장을 포함한다)·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5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